##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56

발의연월일: 2021. 2. 2.

발 의 자:김민석·박상혁·한병도

맹성규 · 박홍근 · 고영인

이수진 • 이장섭 • 송옥주

강득구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의 형집행이 종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동법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은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더 중한 범죄임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빠져있는 것임. 이에 따라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도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9조의 3).

법률 제 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 본문 중 "제2조제1항에"를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범죄(「성폭력	등) 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u>제2조제1항에</u> 따른 성폭	<u>제2조제1항 및 제2항에</u>
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	
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	
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	
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	
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	
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	
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	
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	
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